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6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3.

발의자 : 박정 · 김병욱 · 윤후덕

강창일 · 김해영 · 이찬열

어기구 · 김병관 · 김철민

신경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‘제품’을 물품,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,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‘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,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.

이에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,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

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(안 제9조의2제1항).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”을 “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